

## 국제 수준의 심리사 자격 기준, 핵심역량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법제화 필요성\*

노 은 빈      김 현 진      최 기 홍†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고, 최근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한 예방과 위기개입 등 근거-기반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심리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심리연합(Global Psychological Alliance)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사의 역할을 선언하였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도 근거-기반실천을 제공하는 정신건강 핵심 인력으로서 심리사를 법과 규정에 명시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는 심리사를 법으로 규정하거나, 이들의 서비스를 제도화할 수 있는 심리서비스 법제화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핵심인력으로 심리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소속 국가들이 법에서 규정하는 심리사 자격 기준도 함께 소개하였다. 또한 국제응용심리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pplied Psychology)와 국제심리연맹(The International Union of Psychological Science)에서 선포한 정신건강의 핵심인력으로서 심리사가 갖추어야 할 심리사 핵심역량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 정신건강 증진, 비전문가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등 엄격한 자격 기준을 갖춘 심리사를 법제화 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심리사법, 심리상담, 국제기준, 핵심역량, 법제화

\* 본 논문은 2020년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수행된 심리서비스 입법연구 결과보고서(한국심리학회, 2020)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최기홍, 고려대학교 KU마음건강연구소,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E-mail: kchoi1@korea.ac.kr

 Copyright © 2022,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19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대한 공포, 사회 활동의 축소로 인한 고립, 경제적 위기와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S. W. Kim et al., 2021; Choi et al., 2020; Pfefferbaum & North, 2020). 국내에서도 팬데믹 상황 동안 국민의 42.07%가 경도 수준 이상의 우울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는데 (Korean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KSTSS, 2021), 이는 2018년 조사에서 16.02%였던 것과 비교하면(Community Health Survey, 2018)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5.6%가 경도 이상 수준의 불안을(KSTSS, 2021), 23.6%가 자살 사고를 경험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Bahk et al., 2020).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 핵심 인력으로서 심리사(Psychologist)들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Rehman & Lela, 2020). 심리사들은 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을 도우며, 의료진들의 소진을 방지한다(Arden et al., 2020; Karekla et al., 2021 재인용).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위협 요소가 되기도 하나, 코로나19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평가가 사람들의 행동적,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Inchausti et al., 2020). 예를 들면, 상황에 비해 과하게 경직되거나, 최악을 가정하는 해석과 평가에,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나는 견딜 수 없다’, ‘나는 약하다’)와 같은 인지적 왜곡을 경험하거나,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팬데믹 상황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Chong et al., 2020; Gloster et al.,

2020; Neto et al., 2021). 심리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근거-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Gloster et al., 2020).

전 세계의 심리사들이 정신건강 핵심인력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심리사들은 학교 폐쇄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Tso et al., 2020), 웹캠이나 전화를 통해 청소년 비대면 심리상담을 진행하였고 청소년을 위한 뉴스레터와 양육자를 위한 심리학적 정보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였다(Reupert et al., 2021). 캐나다심리협회(Canadi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PA)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대처법, 효율적인 채택근무 방법, 슬픔과 사별에 대한 간단한 보고서와 YouTube 영상을 제작 및 배포하였으며, 275명의 CPA 회원은 의료진 응급 전화 상담에 자원했다(CPA, 2020). 마찬가지로 인도, 중국, 브라질(Almondés et al., 2021), 미국(Polizzi et al., 2020;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 싱가포르(Singapore Psychological Society, 2020)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심리학 단체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비대면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구를 통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중을 위한 심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비효과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한 국민의 2차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2016년 국제응용심리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pplied Psychology; IAAP)와 국제심리연맹(The International Union of Psychological Science; IUPsyS)에서 심리사의 핵심 역량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핵심역량에는 충분한

심리학적 지식과 기술, 전문적인 행동 및 활동 능력이 포함된다(IAAP & IUPsyS, 2016).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전 세계의 심리학자들은 고등 교육을 받고 체계적인 수련을 받는다. 또한 이들의 전문성은 많은 나라에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동안 국가가 관리하는 심리사 법이 없던 일본에서도 2018년 공인심리사 법이 제정되었고, 호주의 경우 그동안 유지했던 기준을 폐지하고 국제기준에 맞춘 새로운 법적 기준을 내세웠다. 국내에서도 2018년 OECD 국가 자살률 1위, 2018-2020년도 WHO 국가별 행복 지수 조사 60위권과 같은 국민 정신건강 위기 상황과 코로나 상황 이후 대비를 고려하여 국제 수준의 심리사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심리서비스 선진국가와 최근 심리사 법제화에 변화가 있었던 일본과 호주 사례를 살펴보고, OECD 국가들의 자격 기준을 소개한 논문을 요약하여 법제화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격 제도가 요구하는

심리사의 역량은 무엇이며, 이러한 역량이 보장된 자격 기준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IAAP와 IUPsyS가 제창한 심리사 핵심역량을 요약하여 소개하며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도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포함한 국제 기준에 맞는 심리사 자격 기준을 요구하는 심리사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해외 주요 국가의 심리사 자격 기준

이번 장에서는 심리서비스 관련 우수국가로 포함되거나(미국, 캐나다, 영국), 최근 심리사 자격 기준에 변화가 있었던(일본, 호주) 해외 국가들의 심리사 자격 기준을 교육 연한과 수련 여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표 1).

#### 미국/캐나다

미국과 캐나다는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

표 1. 해외 주요 국가의 심리사 자격 기준

	최소 학위	심리학 학사	교육연한 (년)	수련 여부	수련기간 (년)	국가 시험	보수 교육
미국	박사	-	9	O	1	O	O
캐나다	석사/박사	-	6~9	O	2~4	O	O
영국	석사	O	6	O	1	O	O
호주	석사	O	5	O	1	O	O
일본	석사	O	6	X	-	O	X

주. 일본의 경우 심리학과 학사 졸업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현재까지 사례가 존재하지 않음. 또한 학사 졸업만으로 심리사의 교육연한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 없다고 보고됨(Suzuki, 2022).

나, 기본적으로 심리사 전문면허를 위해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과 수련을 요구한다. 캐나다와 미국 면허 관리 위원회 연방(Association of State and Provincial Psychology Boards, ASPPB)은 자격이 있는 심리학자들에게만 심리사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ASPPB, 2016; DeMers & Schaffer, 2012).

여기서 ‘자격이 있는’이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각 주의 관리 규정은 기본적으로 Model Act를 따른다. Model Act에서는 심리사 자격을 위해 1) 최소 박사 이상의 학위 취득과, 2) 평균적으로 인턴십 기간 동안 2,000시간, 3) 박사 후 과정동안 2,000시간 동안 수련감독을 받으며 수련실습을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APA 인준을 받은 훈련 프로그램을 거친 후에야 ASPPB에서 주관하는 전문가 시험(Examination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Psychology; EPPP)에 응시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모든 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을 요구하며, Quebec, Ontario, Manitoba 그리고 British Columbia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박사 이상의 학위 취득을 필요로 한다. 최소 3,000시간의 수련을 거쳐야 하며, Ontario 주의 경우 4년의 수련 기간을 요구한다. 미국과 동일하게 캐나다 역시 필수 학위 취득 및 수련 경험이 있어야 EPPP 응시자격을 취득한다. EPPP외에도 추가적으로 윤리나 법, 인적성에 대한 필기 및 구술 시험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주도 있다.

## 영국

영국에서 공인된 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년 이상 소요되는 심리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전문가의 관리 하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 특히 박사학위를 취득한 임상심리사만이 공공병원에서 심리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다. 또한 영국심리학회(BPS)는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에 참여할 윤리적 책임을 부여하고, CPD 활동을 관리한다. 자격증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자격증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재검증 받아야 한다.

## 호주

호주에서 심리사(psychologist)라는 명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호주 보건직 규제청(The Australian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 AHPRA) 산하의 호주심리학위원회(Psychology Board of Australia)에 등록되어야 한다. 그동안 호주에서는 4년제 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후, 2년 이상의 인턴십 이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고려하여(AHPRA, 2021) 2022년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지원자를 받지 않는다. 대신, AHPRA는 질 높은 상담을 제공하고,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기준을 만들었다.

2022년 7월부터 호주에서 심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1) 심리학과에서 6년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2) 5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후 1,500시간 이상 1년 이상의 인턴십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이 실제 치료나 검사에 투입되기 전에 필수 교육 연한을 늘리는 것은, 교육이 심리서비스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을 보여준다. 교육과 인턴십 수료를 통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국가시험 합격 후에도 1년 주기로 자격 갱신을 해야 한다.

## 일본

일본은 1998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률이 급증하며, 2003년 10만 명당 자살률이 27.0명으로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 사망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자살이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일본 정부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2017년 9월 15일부터 공인심리사 법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였다. 제1회 공인심리사 시험은 2018년 9월에 이루어졌다. 공인심리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 양성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일정 과목 수강 후 인증받은 심리학 대학원에서 석사(2년)를 취득하거나 2) 인증받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일정 과목 수강 후 인증 시설에서 심리 관련 프로그램에 입학한 2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같이 6년간의 교육을 이수 받으면 자격취득을 위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후 30시간의 연수를 수료한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竹内謙彰, 2019; S. Kim 외, 2021 재인용).

## 심리사 법적 규제와 전 세계적 흐름

심리학자들의 업무 및 자격에 대한 법적 규제의 전반적인 현황 및 세계적 추세를 보기 위해 H. S. Kim 등(2022)은 APA 산하의 국제기구인 글로벌 심리연합(Global Psychology Alliance, GPA)과 아시아 태평양 심리연합(Asia Pacific Psychology Alliance, APPA)에 속한 전 세계 55개의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H. S. Kim 등(2022)에 따르면, 연구에 포함된 55개국 중 44개국(80%)이 심리학

분야의 직업 활동에 대한 규제 법안을 보유하고 있다. 법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다음과 같다: 나이지리아, 네팔, 니카라과, 대한민국, 불가리아,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칠레, 탄자니아, 파키스탄. 또한 심리학 직군의 87%가 석사 과정 및 석사 후 교육의 이수를 요구하며, 평균 6.5년(SD=1.6)의 교육 및 훈련을 거친다. 임상심리학과와 심리치료사의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고 규제되는 교육 연한은 각각 평균 7.4년(SD=1.6)과 7.8년(SD=2.1)이었다(H. S. Kim et al., 2022).

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설문에 응답한 33개국 중에서 심리사법이 제정되어 있는 국가는 31개국(93.9%)이며, 심리사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과 칠레뿐이다. 특히, 2000년대 이전에 OECD 국가에 진입한 나라 중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또한 심리사 자격법과 제도를 보유한 27개국 중,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의 최소 기준을 ‘심리학 학사 졸업 후 석사 취득’으로 정한 국가가 가장 많았다. 학사 교육만으로 규정해 놓은 국가는 다음과 같다: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심리사 관련 국가자격증 89개 중에서 의무 수련이 필요한 자격증은 75개(84.3%)로 조사되었다(H. S. Kim et al., 2022).

위 연구 결과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심리사의 역할과 선발기준에 대해 타당하고 보편적인, 엄격한 수준의 법제화된 규제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 심리사에 대한 공식적인 국제적 규제 표준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사의 핵심 역량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심리사로서 자격을 인정받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수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과 수련은 심리사로서의 역량이 있는 전문가를 선발 및 양성하여 대중이 심리상담, 심리치료, 심리평가 등 양질의 심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근거가 확보된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용, 공감, 경청과 같은 공통요인과 함께 정신병리, 학습이론, 생물심리학 등 심리학 기초 이론 및 심리치료의 특수 요인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Trull & Prinstein, 2013). 그렇다면 양질의 심리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심리사로서 역량’이란 무엇인가?

전문적인 심리사를 규정하는 역량 기준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심리학 역량 프로젝트(International Project on Competence in Psychology, IPCP)가 시작되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역량을 ‘개인이 전문적인 실무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규범에 맞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지식, 기술, 능력 및 기타 자질’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심리사들에게 요구하였다. ICPC의 결과물인 ‘심리사 핵심역량에 관한 국제선언(International Declaration on Core Competences in Professional Psychology)’이 2016년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pplied Psychology(IAAP)와 The International Union of Psychological Science(IUPsyS)에 의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심리사 핵심역량에 관한 국제선언에서는 심

표 2. 심리사 핵심역량에 관한 국제선언 세부내용(IAAP & IUPsyS, 2016)

핵심 역량을 뒷받침하는 심리학적 지식과 기술	필수적인 심리학적 지식	기본적인 지식부터 전문적인 지식까지 숙지하기.
	필수적인 심리학적 기술	기본적인 기술부터 전문적인 기술까지 숙지하기.
전문적인 행동 능력	윤리적 행동	심리서비스 제공 시 법과 윤리 기준을 준수할 것.
	전문가로서 행동	전문성을 유지하고, 증명된 치료를 활용할 것.
	내담자 및 타인과 적절한 관계	내담자 및 타전문가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것.
	문화적 맥락을 포함한 다양성에 대한 역량	내담자, 동료 및 타인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증거기반 실무자로서 역할	근거-기반 치료와 평가를 할 것.
전문적인 활동 능력	되돌아보기	필요시 슈퍼비전과 자문을 받으며 되돌아보기.
	적절한 목표 설정	요구분석을 기반으로 내담자와 함께 목표 세우기.
	심리검사 및 평가 실시	목적과 상황에 적절한 평가와 검사 실시 및 연구.
	심리치료 실시	목적과 상황에 적절한 치료 계획, 실시, 연구.
	효율적이고 적절한 의사소통	내담자 및 관련인들에게 명확한 지침,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며 소통할 것.

리사의 핵심 역량을 크게 1) 핵심 역량을 뒷받침하는 심리학 지식과 기술, 2) 전문적인 행동 능력, 3) 전문적인 활동 능력으로 구분하며 이와 더불어 구체적 상황이나 문화적 맥락에서 추가적으로 요하는 역량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IAAP & IUPsyS, 2016). 각 하위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심리사에게는 기초지식부터 윤리 의식, 능숙한 치료 역량까지 다방면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부 졸업 이후 대학원에서 추가적인 심화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가 양성 시스템 내에서의 수련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특히 심리사의 많은 역량이 필기나 구술 시험만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시험 응시 전에 수련을 거쳐 국가시험 합격자들의 역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심리사 핵심역량을 갖춘 국제 수준의 심리사 자격 기준의 필요성

근거-기반실천의 핵심 요소로서 역할 수행

그렇다면 심화 교육과 수련을 거쳐 국가시험 합격자들의 역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치료자가 근거-기반실천(Evidence-based practice)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근거-기반실천이란, 심리치료를 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1) 연구를 통해 근거가 확보된 심리치료를, 2) 임상적으로 숙련된 치료자가, 3) 내담자의 선호 및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

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6). 근거-기반실천 모델은 치료자 역량이 치료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최근 국제심리연합(Global Psychological Alliance, GPA)는 여러 재해 상황에서 심리사들이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핵심 역량을 갖춰야 함을 강조했다(GPA, 2022). 이번 장에서는 핵심역량을 갖춘 심리사가 국민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 수준의 심리사를 충분한 수만큼 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하고자 한다.

### 국민 정신건강 향상 및 피해 최소화

핵심역량을 갖춘 심리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국민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한다. 핀란드는 과거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으로 높은 자살사망률을 기록했다. 이에 핀란드는 국가적으로 1986년 10년 계획으로 Suicide Prevention Project를 시작하여 치료 방법 개발, 심리사회적 지원, 전문가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심리사를 양성하여 국가 차원의 서비스 제공 시, 정신건강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그 결과 2019년 UN 행복지수 1위 국가로 조사되며 국민의 정신건강 및 삶의 질이 비교적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질 낮은 심리서비스는 국민 정신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 여기서 해가 된다(harmful)는 것은 단순히 심리치료가 효과가 없음을 넘어, 심리치료로 인해 직접적으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지속되는 것이다(Curran et al., 2019). 실제 국내에서 내담자의 정신적 취약성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거

나, 동영상을 촬영하고(Hankyoreh, 2019), 성범죄 전과 2범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음이 밝혀져(KBS, 2019) 많은 논란이 되었다. Crawford 등(2016)의 연구에서 14,587명의 환자 중 5%에 속하는 763명이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부정적인 영향에는 질병 및 증상의 악화 또는 재발, 새로운 증상 경험의 있으며, 과도한 약물과 알코올 복용과 같은 행동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기도 한다(Klatte et al., 2022). Curran 등(2019)은 치료자의 성향과 윤리적 문제는 물론이고, 문화적 타당성의 부족과 충족되지 않은 내담자의 기대와 더불어 제한적인 치료 옵션 제공 역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심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도덕성과 다양한 치료를 능숙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장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결론

본 논문은 정신건강의 핵심 인력으로서 심리사를 법제화한 주요 국가의 예를 살펴보고, 심리사가 갖추어야 할 국제 수준의 핵심 역량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OECD 국가에서 법제화하고 있는 심리사 자격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심리사 법제화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 자격기준과 이러한 심리사를 법제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보았다.

먼저, 국내 심리사 법제화 시 심리사 핵심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심리학 역량 과

목을 학부와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일정 기간 전문가 관리 감독 아래 진행되는 수련을 받도록 최소 자격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호주의 심리사 기준과 유사하다(Australian Psychology Accreditation Council; APAC, 2019). 이러한 자격 기준은 학부와 석사 혹은 석사와 박사 기간 동안 해당 교육을 충족할 수 있기에 캐나다, 미국에서 요구하는 박사 기준보다는 유연하며(APA, 2022; Norton et al., 2022), 최근 법제화를 한 일본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竹内謙彰, 2019). 하지만 일본의 경우, 반드시 심리학과를 졸업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본 연구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준이 일본의 기준보다 폭넓게 심리학 핵심 역량을 갖춘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학사 졸업 후 2년간 지정된 기관에서 실습 근무를 하면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경로가 있으나, 현재 학사 졸업만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인증기관이 부재한 점과 현재까지 일본에서 인준 받은 약 40,000명의 심리사들은 모두 석사 교육 이상을 이수한 점을 고려한다면 석사 이상의 자격취득이 권장되며, 학사 수준의 자격취득은 비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Suzuki, 2022).

OECD 회원국의 심리사들은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심리학 전공 지식과 연구 능력을 배우며, 석사 취득 이후 평균 2년 이상, 3,000 시간의 수련을 이수해야 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최소 자격기준은 OECD 국가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응용심리학회(IAAP)와 국제심리연맹(IUPsyS)에서 발표한 심리사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국제심리연합(GPA)은 최근 심리사들은 심리학적



지식과 기술을 숙지하고, 윤리적 행동을 포함한 근거-기반 치료자로서 행동 능력을 갖추며, 목적과 상황에 적절한 심리서비스 제공하는 등 전문가로서 활동할 역량을 갖추야 함을 천명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심리사의 자격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1) 치료 성과 향상, 2) 국민 정신건강 향상, 3) 국민 2차 피해 방지에 있다. 심리사의 역량은 심리서비스의 질에 반영되며, 양질의 심리서비스는 기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정신건강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Fairburn & Cooper, 2011). 반대로 충분한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심리서비스는 2차 피해 등 정신건강서비스 수혜자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Castonguay et al., 2010). 따라서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포함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명시하여 심리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심리서비스의 질을 국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정신건강 영역에서 심리사의 자격으로 심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심리사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竹内謙彰. (2019). 公認心理師をどう捉えるか (特別 分科会). *心理科学*, 40(1), 35\_2-36.  
[https://doi.org/10.20789/jraps.40.1\\_35\\_2](https://doi.org/10.20789/jraps.40.1_35_2)
- AHPRA. (2021). *Retirement of the 4+2 internship program*.  
<https://www.psychologyboard.gov.au/Registration/Provisional/Retirement-of-4-2-internship.aspx>
- Almondes, K. M. d., Bizarro, L., Miyazaki, M. C. O. S., Soares, M. R. Z., Peuker, A. C., Teodoro, M., Modesto, J. G., Veraksa, A. N., Han, B., Singh, P., & Sodi, T. (2021). Comparative analysis of psychology responding to COVID-19 pandemic in brics nations. *Frontiers in psychology*, 12, 1925.  
<https://doi.org/10.3389/fpsyg.2021.567585>
- APA. (2020). *How psychologists are helping America cope with the new normal*.  
<https://www.apa.org/topics/covid-19/helping-america>
- APA. (2022). *Licensing Guidelines Around the World*.  
<https://div52.net/international-licensing-guidelines/>
- APAC. (2019). *Accreditation Standards for Psychology Programs*.  
<https://psychologycouncil.org.au/education-providers/standards/>
- APA Presidential Task Force on Evidence-Based Practice. (2006). Evidence-based practice in psychology. *The American Psychologist*, 61(4), 271-285.  
<https://doi.org/10.1037/0003-066X.61.4.271>
- Arden, M. A., Byrne-Davis, L., Chater, A. M., Hart, J., McBride, E., & Chilcot, J. (2020). The vital role of health psychology in the response to COVID-19.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5(4), 831-838.  
<http://doi.org/10.1111/bjhp.12484>
- ASPPB. (2016). *Psychological licensing exam scores by doctoral program*.  
<https://www.asppb.net/page/ScoresByDrProgram>
- Bahk, Y. C., Park, K., Kim, N., Lee, J., Cho, S., Jang, J., Jung, D., Chang, E. J., & Choi, K. H., (2020). Psychological impact of COVID-19 in South Korea: A preliminary stud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39(4), 355-367.  
<https://doi.org/10.15842/kjcp.2020.39.4.008>
- Castonguay, L. G., Boswell, J. F., Constantino, M. J., Goldfried, M. R., & Hill, C. E. (2010). Training implications of harmful effects of psychological treatments. *American psychologist*, 65(1), 34. <https://doi.org/10.1037/a0017330>
- Choi, E. P. H., Hui, B. P. H., & Wan, E. Y. F. (2020). Depression and anxiety in Hong Kong during COVID-19.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0), 3740. <https://doi.org/10.3390/ijerph17103740>
- Chong, Y. Y., Chien, W. T., Cheng, H. Y., Chow, K. M., Kassianos, A. P., Karekla, M., & Gloster, A. (2020). The role of illness perceptions, coping, and self-efficacy on adherence to precautionary measures for COVID-19.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8), 6540. <https://doi.org/10.3390/ijerph17186540>
- Community Health Survey (2018).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8837&page=1](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8837&page=1)
- CPA. (2020). *Corona Virus-Covid-19 Public Resources & Member Messages*. <https://cpa.ca/corona-virus/>
- Crawford, M. J., Thana, L., Farquharson, L., Palmer, L., Hancock, E., Bassett, P., Clarke, J., & Parry, G. D. (2016). Patient experience of negative effects of psychological treatment: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208(3), 260-265.  
<http://doi.org/10.1192/bjp.bp.114.162628>
- Curran, J., Parry, G. D., Hardy, G. E., Darling, J., Mason, A.-M., & Chambers, E. (2019). How does therapy harm? A model of adverse process using task analysis in the meta-synthesis of service users' experience. *Frontiers in psychology*, 10, 347.  
<http://doi.org/10.3389/fpsyg.2019.00347>
- DeMers, S. T., & Schaffer, J. B. (2012). The regulation of professional psychology. In S. J. Knapp, M. C. Gottlieb, M. M. Handelsman, & L. D. VandeCreek (Eds.), *APA handbook of ethics in psychology, Vol. 1. Moral foundations and common themes* (pp. 453-48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3271-018>
- Fairburn, C. G., & Cooper, Z. (2011). Therapist competence, therapy quality, and therapist training.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9(6-7), 373-378.  
<https://doi.org/10.1016/j.brat.2011.03.005>
- Gloster, A. T., Lamnisos, D., Lubenko, J., Presti, G., Squatrito, V., Constantinou, M., Nicolaou, C., Papacostas, S., Aydin, G., Chong, Y. Y., Chien, W. T., Cheng, H. Y., Ruiz, F. J., Garcia-Martin, M. B., Obando-Posada, D. P., Segura-Vargas, M. A., Vsiliou, V. S., McHugh, L., Höfer, S., . . . & Karekla, M. (2020).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mental health: An international study. *PloS one*, 15(12), e0244809.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44809>
- GPA. (2022). *Global Psychology Alliance Statement on the Role of Psychologists in International Emergencies*.  
<https://www.apa.org/international/networks/global-psychology-alliance/tip-sheets-international-efforts>

- Hankyoreh. (2019). *Sexual violence in a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that is not recognized as a "crime" even if it is an "illegal act" due to civil law*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899577.html>
-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 De Neve, J. E. (2021). *World Happiness Report 2021*.  
<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1/>
- IAAP & IUPsyS. (2016). *International declaration on core competences in professional psychology*.  
<https://iaapsy.org/policies-initiatives/ipcp-documents/>
- Inchausti, F., MacBeth, A., Hasson-Ohayon, I., & Dimaggio, G. (2020). Psychological intervention and COVID-19: what we know so far and what we can do.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50(4), 243-250.  
<https://doi.org/10.1007/s10879-020-09460-w>
- Karekla, M., Höfer, S., Plantade-Gipch, A., Neto, D. D., Schjødt, B., David, D., Schütz, C., Eleftheriou, A., Pappová, P. K., Lowet, K., McCracken, L., Sargautytė, R., Scharnhorst, J., & Hart, J. (2021). The role of psychologists in healthcar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pen*.  
<https://doi.org/10.1024/2673-8627/a000003>
- KBS. (2019). *The fact-finding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is in danger*.  
[https://www.youtube.com/watch?v=D5ry9Z2Y\\_Ys](https://www.youtube.com/watch?v=D5ry9Z2Y_Ys)
- Kim, H. S., Yoon, S., Son, G., Hong, E., Clinton, A., Grus, C. L., Murphy, D., Siegel, A. S., Karayianni, E., Ezenwa, M. O., Zara, G., Germán, G., Balva, D., Chey, J., & Choi, K.-H. (2022). Regulations Governing Psychologists: An International Survey. [unpublished manuscript]
- Kim, S., Choi, N. Y., & Cheong, M. J. (2021). Proposal for the Legislation of Psychological Counseling Qualification: Reviewing Examples of Japanese and the U.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2(5), 11-21.  
<https://doi.org/10.15703/kjc.22.5.202110.11>
- Kim, S. W., Park, I. H., Kim, M., Park, A. L., Jhon, M., Kim, J. W., Kang, H. J., Rye, S., Lee, J. Y., & Kim, J. M. (2021).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f depression in the general population during the COVID-19 epidemic in Korea. *BMC psychiatry*, 21(1), 1-8.  
<https://doi.org/10.1186/s12888-021-03449-y>
- Klatte, R., Strauss, B., Flückiger, C., Färber, F., & Rosendahl, J. (2022). Defining and assessing adverse events and harmful effects in psychotherapy study protocols: A systematic review. *Psychotherapy*.  
<https://doi.org/10.1037/pst0000359>
- KSTSS. (2021). *COVID-19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in the second quarter of 2021*.  
<http://kstss.kr/?p=2463>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20). *Psychological Services Legislative Study*.
- Neto, D. D., Da Silva, A. N., Roberto, M. S., Lubenko, J., Constantinou, M., Nicolaou, C., Lamnisos, D., Papacostas, S., Höfer, S., Presti, G., Squatrito, V., Vasiliou, V. S., McHugh, L., Monestès, J. L., Baban, A., Alvarez-Galvez, J., Paez-Blarrina, M., Montesinos, F., Valdivia-Salas, S., . . . & Kassianos, A. P. (2021). Illness perceptions of COVID-19 in

- Europe: Predictors, impacts and temporal evolution. *Frontiers in psychology*, 12.  
<http://doi.org/10.3389/fpsyg.2021.640955>
- Norton, P. J., Norberg, M. M., Naragon-Gainey, K., & Deacon, B. J. (2022). An examination of accreditation standards between Australian and US/Canadian doctoral programs in clinical psychology. *Clinical Psychologist*, 1-7.  
<https://doi.org/10.1080/13284207.2021.1949944>
- OECD (2022), *Suicide rates (indicator)*.  
<https://doi.org/10.1787/a82f3459-en>
- Pfefferbaum, B., & North, C. S. (2020). Mental health and the Covid-19 pandemic.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83(6), 510-512.  
<http://doi.org/10.1056/NEJMp2008017>
- Polizzi, C., Lynn, S. J., & Perry, A. (2020). Stress and coping in the time of COVID-19: Pathways to resilience and recovery. *Clinical Neuropsychiatry*, 17(2), 59.  
<http://doi.org/10.36131/CN20200204>
- Rehman, S., & Lela, U. (2020). Psychological aid to COVID-19 pandemic: a mental health response to crises management. *Psychiatria Danubina*, 32(2), 262-265.  
<https://doi.org/10.24869/psyd.2020.262>
- Reupert, A., Schaffer, G. E., Von Hagen, A., Allen, K.-A., Berger, E., Büttner, G., Power, E. M., Morris, Z., Paradis, P., Fisk, A. K., Summers, D., Wurf, G., & May, F.(2021). The practices of psychologists working in schools during COVID-19: A multi-country investigation. *School Psychology*.  
<https://doi.org/10.1037/spq0000450>
- SPS. (2020). COVID=10 Mental Health Advisory Hub.  
<https://singaporepsychologicalsociety.org/covid-19-mental-health-advisory-hub/>
- Suzuki, H.. (2022) *Legislation and Regulations of professional Psychology Licensure in Japan*. 2022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International Forum.
- Trull, T. J. & Prinstein, M. J. (2013). *Clinical psychology*. Belmont, Wadsworth/Cengage Learning.
- Tso, W. W. Y., Wong, R. S., Tung, K. T. S., Rao, N., Fu, K. W., Yam, J. C. S., Chua, G. T., Chen, E. Y. H., Lee, T. M. C., Chan, S. K. W., Wong, W. H. S., Xiong, X., Chui, C. S., Li, X., Wong, K., Leung, C., Tsang, S. K. M., Chan, G. C. F., Tam, P. K. H., . . . & Ip, P. (2020).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in childr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1, 161-176.  
<https://doi.org/10.1007/s00787-020-01680-8>

1차원고접수 : 2022. 05. 17.

최종게재결정 : 2022. 06. 18.

## International standards for licensing psychologists, required core competencies and legislation in South Korea

Eunbin Ro<sup>1)</sup>      Hyunjin Kim<sup>1)</sup>      Kee-Hong Choi<sup>1),2)</sup>

<sup>1)</sup>School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sup>2)</sup>KU Mind Health Institute, Korea University

As national demands in mental health have sharply increased in modern society, importance of psychological services and their regulation for the public have surged. The Global Psychological Alliance has declared the role of psychologists for citizens' mental health in 2022. The majority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have legis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psychologists for providing evidence-based and ethical psychological services, and protecting the public from unethical and harmful services by specifying core competencies of psychologists. However, there is no legal regulation of psychologists in South Korea. The current study reviewe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psychologists including Canada,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United Kingdom (UK), Australia, and Japan. The required qualification standards for licensed psychologists in OECD countries were also summarized. Finally, we discussed the benefits of regulations and legislation of psychologists and the need of requiring core competencies for psychologists. It is concluded that international standards of psychologists should be implemented to enhance the public mental health and minimize harm.

*Key words* : licensed psychologist, psychological counseling, international standards, core competences, legislation